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와 응급대기실 설치 의무화 〉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389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및 응급대기실 설치 의무화	3

I. 개요

1.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38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호선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2. 11.

(3) 회 부 일 : 2024. 12.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박물관과 미술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장소에는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와 함께 응급처치가 가능한 공간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참고로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운영규정」에 따라 응급대기실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과 미술관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과 미술관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고 응

급처치를 위한 공간인 응급대기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4 및 제47조의4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및 응급대기실 설치 의무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와 응급대기실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 6의3. (생략) <u><신설></u>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 ----- ----- ----- -----.
7. (생략) ② ~ ⑤ (생략) <u><신설></u>	1. ~ 6의3. (현행과 같음) 6의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한정한다) 7.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7조의4(응급대기실 운영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

	<u>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는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응급대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응급대기실에는 응급처치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응급대기실 설치기준, 제2항에 따른 인력과 장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47조의2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20톤 이상의 선박,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관광지·관광단지 소재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 6의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개정안은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의무설치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추가하고, 해당 박물관·미술관에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한 응급대기실 설치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상시 이용하는 시설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능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임.

□ 응급대기실 설치에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시설 기준과 관련되는 것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은 별표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요건 중 안전시설 관련 사항으로는 소방시설의 설치와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만을 규정하고 있고,(참고자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등록요건) ① 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운영규정」(국립중앙박물관 예규 제238호)에서 응급대기실 운영, 근무자 자격·배치, 환자 이송 기록, 일지 작성 등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응급대기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13개 지방박물관은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응급대기실과 응급처치 인력·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박물관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인력에 대하여는 주변 의료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여짐.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여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함.

- 현행 법령 체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지침에서 설치시설을 권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응급대기실은 시설 기준과 관련되므로 응급의료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국·공립 박물관은 예산, 인력 및 설치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응급대기실 설치 및 응급인력 배치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박물관 상황에 맞게 시설 및 인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법적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9

[참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	---------------------------------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제9조 관련)

1. 공통요건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같은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한정한다)

다.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가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1) 자료의 해당 분야에의 적합성
- 2) 자료 수집의 적정성
- 3) 자료의 학술적·예술적·교육적·역사적 가치
- 4) 자료의 희소성
- 5)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가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2. 개별요건

가.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 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 설
종합 박물관	각 분야별 100점 이상	각 분야별 1명 이상	1)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해당 전시실 2) 수장고(收藏庫) 3) 작업실 또는 준비실 4) 사무실 또는 연구실 5)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6)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전문 박물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미 술 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동 물 원	100종 이상	1명 이상	1) 3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전시실을 포함한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동물 사육·수용 시설 4) 동물 진료·검역 시설 5) 사료창고 6) 오물·오수 처리시설
식 물 원	실내 : 100종 이상 야외 : 200종 이상	1명 이상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6,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육종실(育種室: 품종 개량 및 개발 연구 공간) 4) 양묘장 5) 식물병리시설 6) 비료저장시설
수 족 관	100종 이상	1명 이상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수족치료시설 4) 순환장치 5) 예비수조

나.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 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 설
자료관·사료관·유물관·전시장·전시관·향토관·교육관·문서관·기념관·보존소·민속관·민속촌·문화관 및 예술관	60점 이상	1명 이상	1) 82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자료실·도서실 및 강당 중 1개 시설 4)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문화의 집	도서·비디오테이프 및 콤팩트 디스크 각각 300점 이상	1) 다음의 시설을 갖춘 363제곱미터 이상의 문화공간 가) 인터넷 부스(개인용 컴퓨터 4대 이상 설치) 나) 비디오 부스(비디오테이프 레코더 2대 이상 설치) 다) 콤팩트디스크 부스(콤팩트디스크 플레이어 4대 이상 설치) 라) 문화관람실(빔 프로젝터 1대 설치) 마) 문화창작실(공방 포함) 바) 안내데스크 및 정보자료실 사) 문화사랑방(전통문화사랑방 포함) 2) 도난 방지시설
-------	--------------------------------	---